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안내문

□ 개요

○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전자파로부터 **국민의 안전**과 **기기 간 혼·간섭 예방을 위해** 적합성평가(KC : 전파인증)를 받도록 **법적의무**를 부과

- 사업자는 **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·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**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었는지 시험을 통해 **전파인증을 받아야 함**

□ 신청·처리 절차

○ **(신청)** 사업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설계단계부터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전 적합성평가(KC : 전파인증)를 신청

- 고시*의 분류기준에 따라 **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**으로 신청하고, 신기술 제품 등 기술기준이 없는 경우 **잠정인증**으로 신청 가능

  *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(국립전파연구원 고시)

○ **(처리 절차) 적합인증**은 제품의 **시험 및 서류심사**를 거쳐 인증서 교부, **적합등록**은 **시험 후 서류심사 없이** 적합등록필증 교부

구분	적합인증	적합등록	
		지정시험기관	자기시험
처리 절차	↓	↓	↓
	지정시험기관 시험	지정시험기관 시험	자기시험 * 제조사 자체 시험 가능
	↓	↓	↓
	인증신청 (전파시험인증센터)	등록 (전파시험인증센터)	등록 (전파시험인증센터)
	↓		
	인증심사 (전파시험인증센터)	* 심사 절차 없음 ↓	* 심사 절차 없음 ↓
	↓		
	적합인증서 교부	적합등록 필증 교부	적합등록 필증 교부
대상 기기	휴대폰, 전화교환기 등	컴퓨터, 모니터, 전기기기, 조명기기, 전동기기 등	계측기, 산업용 플랜트 설비, 산업용 컴퓨터 등

※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(이천) : TEL. 031-644-7531~5

* 적합인증,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(전파시험인증센터 / www.emsit.go.kr)

※ 적합성평가에 대한 사항 위반 :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, 시정조치 등(전파법 제58조의4, 제84조, 제86조, 제90조, 제92조)